

직원인사위원회 규정
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직원인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·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조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된다. 단 총무처장 께위 시 총장이 지명 임명한다.

③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 3조(임기)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결원으로 인한 후 임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 4조(기능)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총장이 직원을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
2. 기타 총장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5조(위원장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회무를 통리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6조(회의소집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7조(회의록 작성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·날인 하여야 한다.

제 8조(간사 등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 9조(회의록 작성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